

미디어센터 규정

(제정 2024. 2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미디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온라인 콘텐츠 제작
- 신문(영자신문 포함) 발간
- 교내 방송
-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
-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 대여
- 그 밖에 매체별 운영에 관한 업무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인력) 센터 업무는 대외협력홍보실에서 관장하며, 센터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직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연수 및 교육) 센터 구성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3장 구성

제6조(구성) ①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홍보대사, 대학신문사(이하 “신문사”라 한다), 교육방송국(이하 “방송국”이라 한다)을 두고 학생 부원을 둘 수 있다.

② 홍보대사는 기장, 팀장, 일반부원으로 구성하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신문사는 국장, 부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신문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.

④ 방송국은 국장, 부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교내 방송 업무를 관장한다.

⑤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홍보대사, 신문사, 방송국의 부원은 미디어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제작회의) 기획·제작·편집·방송 계획·매체 운영 수립을 위하여 매달 한 차례 매체별 제작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

다.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된다.

③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 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내외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
3. 센터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4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수혜 및 자격제한

제12조(장학금) 홍보대사, 신문사, 방송국의 부원에게 「장학규정」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자격제한) 업무 수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업 성적이 장학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, 담당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) 홍보대사, 신문사, 방송국의 부원 중 학교 또는 센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총장 또는 센터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6장 재정 및 결산

제15조(재정) 센터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예·결산) 센터의 예·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